

인천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459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변호사 이정선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박찬향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2014. 1. 24.경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2., 이자 '원금 변제기까지 월 400,000원(연 24%)'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 27.경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7., 이자 '원금 변제기까지 월 400,000원(연 24%)'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약정된 변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제 이행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B와 D의 요청에 따라 2014. 1. 24.경 차용금증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였으나,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차용금증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차용금증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

위 서명 직후 피고가 연대보증을 관한 무효화 요구를 함에 따라 원고, 피고, D은 2014. 1. 27.경 피고의 연대보증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파기하였다. 설령 피고의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이하에서는 ‘갑 제1호증’이라고만 한다)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은 사본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1호증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왔는데(피고는 갑 제1호증에 관하여 피고 인적사항 기재와 일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날인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연대보증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서명하였다가 합의 하에 그 원본을 바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의 원본을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오히려 피고의 주장대로 연대보증에 관한 무효화 합의에 따라 관련 차용금증서가 파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증언은 원고와 B가 부부 관계인 점, B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게 된 것인데 이후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B가 원고에 대하여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증인 D의 증언은 ‘피고가 2014. 1. 24.경 형식적으로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가 2014. 1. 27.경 원고, 피고, D 3자 간에 피고의 연대보증 취지가 기재된 갑 제1호증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증인 D의 증언 및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용